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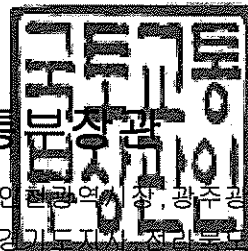
(경유)

제목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협조 요청

1.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-65(2018.3.22.)호 관련입니다.
2.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를 행위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대폭 완화('17.9.29 개정)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 신고 시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신고 도면의 종류가 서로 상이(전자 또는 수기)하여 전기차 보급?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, 수기도면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('18.2)」이 지난 달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, 관련 규제 개선내용이 즉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사본 1부. 끝.

국토교통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강원도지사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지사, 울산광역시, 충청남도지사, 경기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

주무관 안정석 사무관승진예정 정재형 주택건설공급과전결 03/26
자 과장 이유리

협조자

시행 주택건설공급과-2135 (2018.03.26.) 접수 공동주택과-5329 (2018.3.26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주 / http://www.molit.go.kr
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

전화 044-201-3377 /전송 044-201-5684 / seok2289@molit.go.kr / 대시민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



산업통상자원부

산업통상자원부

수신 국토교통부장관(주택건설공급과장)

(경유)

제목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규제개선 협조 요청

1.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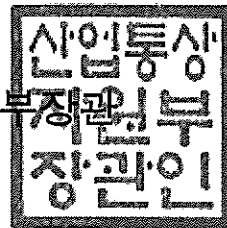
2. 우리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충전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신고시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),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신고도면의 종류가 상이*하여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* 수기도면 또는 전자도면 제출이 가능함에도 지자체는 편의상 전자도면 제출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

3.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 안건인 「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」('18.2월)에 동 과제가 포함되어 보고된 바, 관련 규제개선(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시 수기도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시달)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서울특별시

산업통상자원부



장관인

주무관 윤해 행정사무관 김미연 과장 전결 2018. 3. 22. 최진혁

협조자

시행 에너지신산업과-65 (2018. 3. 22.) 접수 주택건설공급과-2075 (2018. 3. 22.)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, 산업통상자원부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5399 팩스번호 044-203-4769 / yunhae87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